



발행일 2020년 06월 3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현안분석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

이 송 립*

- 01 I. 서론
- 02 II. 공휴일 제도 현황
- 05 III.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
- 12 IV. 공휴일 법제화 논의
- 18 V. 결론

요 약

□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국가휴일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규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국민의 휴일을 선도하며 국가 휴일제도의 실질적인 기준이 돼 왔으나, 휴식권 보장 강화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제고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법제화 요구에 직면해 왔음
- 한편, 휴식권 보장 강화는 제18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공휴일 법제화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2018년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실현되면서 관련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음

□ 향후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법체계 정비와 이를 통한 휴식권 보장 견고화 및 공휴일 지정 취지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분리, 국경일법과의 연계, 공휴일의 안정성 제고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법제와 구별되는 국내 공휴일 법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공휴일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 있으며, 요일지정제를 적용하지 않음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보
02-6788-3842
leesonglim@assembly.go.kr



I. 서론

-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의 휴일을 정하는데 그치는 형식적인 한계가 있지만, 민간부문이 참고해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70년 이상 국민의 휴일을 선도해 왔음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 간 향유할 수 있는 휴일의 격차가 심화되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국회에서도 제18대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휴일법제정안이 총 30건 이상 발의되는 등 공휴일 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 논의가 10년 이상 지속돼 온 바 있음
- 그동안 국회에서의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공휴일 유급휴일화를 통한 공휴일수 보장 및 휴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음
 - 제19대 국회에서 공휴일법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공휴일 법제화는 무산됐지만 대신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¹⁾하여 휴일 양극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바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공휴일 유급휴일화 조치는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견지해 온 민간의 휴일관계에 대한 사적자치 존중의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이로써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국민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
 - 이러한 조치는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크게 강화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공휴일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법제화를 통한 안정성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한 측면도 있음
- 향후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법체계 정비와 이를 통한 휴식권 보장 견고화 및 공휴일 지정 취지 강화를 쟁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세부적으로는 ① 휴일의 안정성 확보 ② 관련 용어의 정비, ③ 일요일과 공휴일의 분리, ④ 국경일법과의 연계 ④ 요일지정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결국,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공휴일 지정권한을 입법권으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를 살펴보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현행 공휴일 법제의 문제점과 공휴일 법제화 논의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함

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됨

II. 공휴일 제도 현황

1. 관련 법제

- 공휴일과 법정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의날법')에 각각 근거하고 있음
 -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법은 각각 주휴일²⁾과 근로자의 날³⁾을 휴일로 정함
 - 공휴일은 「천문법」⁴⁾에 따라 월력요향⁵⁾에 적색으로 표기되어 관보에 게재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제작된 달력에 동일하게 구분 표기되지만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적색으로 표기되지 않음⁶⁾
 - 한편, 근로자의 날은 관련법에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어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데 반해, 공휴일은 특별권력관계에서 정한 공무원의 휴일(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할 뿐이어서 일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하는 절차가 필요함⁷⁾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휴일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음
 - 지방공휴일의 지정요건은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②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날로, ③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을 대상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영 제3조)
 - 현재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2018.3.22.제정)⁸⁾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2020.5.8.제정)이 있음
 - 지방공휴일규정은 지방공휴일을 '휴일(休日)'이 아닌 '휴무일(休務日)'로 정의함⁹⁾
 - 「근로기준법」상 '(약정)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 반해,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지만 이를 면제한 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참고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의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4) 제5조(천문역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향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5)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임

6) 이러한 절차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2017년 10월 「천문법」 개정으로 제5조제3항이 신설된 이후부터이며, 개정 이전에는 국가의 개입없이 한국천문연구원 발표하는 월력요향을 기준으로 달력 제작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색 구분 표기 등을 결정하였음

7) 한편,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

8) 201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이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위임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음

9) 「지방공휴일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함(관공서공휴일규정은 '공휴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지방공휴일규정은 '지방공휴일'에 대해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밖에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하, '국경일법')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정하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국경일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총 5일의 국경일을 정하고, 기념일규정은 총 51종의 기념일을 정함([표 1] 참조)

【표 1】 국경일,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현황

구분	내용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지방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희생자 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기념일	2·28민주운동 기념일, 3·8민주의거기념일, 3·15의거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4·3희생자 추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의병의 날,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전쟁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납세자의 날, 상공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바다의 날, 환경의 날, 철도의 날, 정보보호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국제연합일, 교정의 날, 지방자치의 날, 금융의 날, 무역의 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장애인의 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예비군의 날, 노인의 날, 국군의 날, 세계 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농업인의 날, 소비자의 날, 경찰의 날

※ 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임

※ 자료: 각 법령을 기초로 작성

2.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도

-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인 경우, 다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영 제3조)
 -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명절(설날·추석 연휴)과 어린이날로 한정하고 ① 명절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에만 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며 ②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뿐만 아니라 토요일인 때에도 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¹⁰⁾
-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당해에 한해 효력을 갖는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임시공휴일은 2017년 10월 2일¹¹⁾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60회 지정되었으며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음

10) 대체공휴일제는 1959년에 최초로 도입(당시, 공휴일중복제)된 바 있으며, 1960년에 폐지된 후 1989년에 재도입(당시, 익일휴무제)되었다가 1990년에 다시 폐지된 후 2013년에 재차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대체공휴일의 범위는 과거의 제도가 현행보다 더 넓게 허용한 측면이 있음

· 1959년 공휴일중복제 :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함

· 1989년 익일휴무제 : 연휴 외의 공휴일이 겹칠 때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

11) 2017년 10월 2일은 일요일과 추석연휴 첫째날의 사이에 놓인 평일(월요일)이었음

3. 국경일법 및 관공서공휴일규정 연혁

- 국경일법은 관공서공휴일규정이 제정된 지 4개월 뒤인 1949년 10월에 제정되어 총 2차례 개정됨
 - 1차(2005년) 개정은 국가기념일이었던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며, 2차(2014년) 개정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한편, 국경일법 시행령은 실제로 제정된 바 없음

표 2 | 국경일법 연혁

구분	내용
1949.10.1. 제정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총 4종)
2005.12.29.	한글날 추가(총 5종)
2014.12.30.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자료: 각 개정 법을 기초로 작성

- 관공서공휴일규정은 1949년 6월 4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20차례 개정됨
 - 제정 당시에는 일요일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1일의 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변함없이 공휴일인 날은 1월 1일, 3.1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기독탄신일 총 6일임

표 3 | 관공서휴무일규정 주요 개정 내역

구분	내용
1949.06.04. 제정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2일·3일, 식목일, 추석, 한글날, 기독탄생일, 임시공휴일
1950.09.18.	국제연합일 추가
1956.04.19.	현충기념일 추가
1959.03.27.	대체공휴일제(당시 공휴일중복제) 최초 도입
1960.03.16.	사방(砂防) ¹²⁾ 의 날 추가(식목일 제외)
1960.12.30.	대체공휴일제(공휴일중복제) 폐지
1961.02.27.	식목일 다시 추가
1975.01.27.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추가, 기독탄신일(기독탄생일에서 명칭 변경)
1976.09.03.	국군의 날 추가(국제연합일 제외)
1985.01.21.	민속의 날 추가(음력 1월 1일)
1986.09.11.	추석 다음날 추가
1989.02.01.	대체공휴일제(당시 익일휴무제) 재도입, 1월 3일 제외, 설날 전날 및 다음날 추가, 추석 전날 추가
1990.11.05.	대체공휴일제(익일휴무제) 폐지, 국군의 날 제외, 한글날 제외
1998.12.18.	1월 2일 제외
2005.06.30.	제헌절 제외(2007년까지 유지), 식목일 제외
2006.09.06.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추가
2012.12.28.	한글날 다시 추가
2013.11.05.	대체공휴일제(현행) 다시 도입

※ 자료: 각 개정 법령을 기초로 작성

12) 흙·모래·자갈이 이동해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토목공사를 하는 일

Ⅲ.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

1. 미국: 연방법전(U.S. Code)

□ 주요 법제

- 미국 연방법¹³⁾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총 10일의 법정공휴일(legal Public Holiday)을 규정하고 있음
 - 연방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적용대상이 연방정부 직원에 한정되고 지역적 범위는 수도로 제한됨¹⁴⁾
- 각 주는 연방공휴일에 기초하여 주 법률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공휴일을 지정하고 정부직원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만 민간부문의 준수를 강제하지는 않음¹⁵⁾

표 4 연방 공휴일

구분	공휴일	날짜 및 요일	비고
연방 공휴일 (10일)	New Year's Day (신년일)	1월 1일	선거일 별도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마틴루터킹 탄생일)	1월 세번째 월요일	
	Washington's Birthday (워싱턴 탄생일)	2월 세번째 월요일	
	Memorial Day (현충일)	5월 마지막 월요일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6월 4일	
	Labor Day (노동절)	9월 첫번째 월요일	
	Columbus Day (콜럼버스의 날)	10월 두번째 월요일	
	Veterans Day (재향군인의 날)	11월 11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11월 네 번째 목요일	
	Christmas Day (성탄절)	12월 25일	

※ 자료: 연방법을 기초로 작성

- 주 법률의 공휴일 규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크게 ① 적용대상을 정부직원으로 한정 한 형태, ② 일반규정에서 공휴일을 정하고 정부직원의 준수를 법률이나 행정명령으로 정한 형태, ③ 법률 용어 규정에서 정의된 형태, ④ 기타 상업·금융·사법 영역에서 규정한 형태 등이 있음

표 5 공휴일 규정 유형별 주정부 현황

구분	주(州)
적용대상을 정부직원으로 한정 (9개)	알래스카(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텍사스, 네바다, 아칸소, 로드아일랜드, 유타(일)
일반규정에서 정하고 정부직원의 준수를 별도로 규정 (32개)	사우스캐롤라이나, 오레곤(일),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일), 사우스다코타(일), 워싱턴(일), 몬테나(일),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노스다코타(일), 테네시, 펜실베이니아(토),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토),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앨라배마(일), 애리조나(일), 코네티컷, 델라웨어(토), 조지아, 캔사스, 루지애나(일), 아이오와, 인디애나, 아이다호(일), 뉴멕시코, 뉴저지(토)
법률 용어 규정에서 정의 (5개)	웨스트버지니아, 메사추세츠, 오하이오, 오클라호마(토)(일), 뉴욕
기타 영역에서 규정 (4개)	플로리다, 일리노이즈, 메인, 네브라스카

※ 주: 공휴일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는 주는 각각 우측에 (토), (일)로 표기함

※ 자료: 각 주 법률을 기초로 작성

13) U.S. Code Section 6103

14) 연방법 상 공휴일은 연방정부 직원의 복무를 규율하는 규정에 열거되어 있어 적용대상이 연방정부 직원으로 한정됨

15) 그러나, 주정부 대부분은 연방공휴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공휴일을 정하고, 민간부문 또한 대체로 주공휴일을 준수하고 있음

- 국가기념일¹⁶⁾
 - 연방법은 공휴일과 별개로 30종의 기념일 및 9종의 기념주, 6종의 기념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념일에는 3종의 연방 공휴일(Columbus Day, Memorial Day, Veterans Day)이 포함됨
-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도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직전 금요일과 직후 월요일을 각각 대체공휴일로 정함
 - 대통령이나 주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 금식기도, 종교의식 등과 관련하여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요일지정 공휴일제
 - 1968년 제정되어 1971년 시행된 월요일 공휴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에 의해 일부 공휴일이 월요일로 변경됨¹⁷⁾

□ 시사점

- 일부 주가 일요일 및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하고 있지만([표 5] 참조) 연방 및 50개 주 전체적으로 일요일 및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임
- 요일지정제와 대체공휴일제를 함께 적용하되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연간 실질 공휴일수 편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 한편,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되는 공휴일은 날짜 자체가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은데, 토요일과 중복 시 직전 금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은 기념일의 본래 날짜로부터 가급적 시간적 거리를 짧게 두는 것으로 월요일로 지정하는 경우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¹⁸⁾

2. 일본: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

□ 주요 법제

- 일본은 일반 국민의 휴일과 국가기관의 휴일을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함
 -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축일법’)에서 총 16일의 국민 축일을 정하고 휴일임을 명시함¹⁹⁾
 - 국가기관의 휴일은 행정·입법·사법기관으로 구분하여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 「국회에 설치된 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国会に置かれる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裁判所の休日に関する法律)」 및 「검찰심사회법(檢察審査會法)」에서 각각 정함²⁰⁾

16) U.S. Code Title 36. Chapter 1. PATRIOTIC AND NATIONAL OBSERVANCES Section 101-145

17) 동법에 대해, 당시 상하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힘(Federal Holidays: Evolution and Applic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2014)
연휴를 조성하여 ① 멀리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화합할 기회를 증진함 ② 여행을 통한 폭넓은 여가활동을 향유하게 함 ③ 추모 활동을 강화함 ④ 가정 내 교육, 문화, 취미 활동 기회를 신장함 ⑤ 결근 감소와 주중 휴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방지하여 산업·상업 생산성을 제고함

18)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날에 한정하여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평일인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함

19) 「국민축일법」 제3조제1항 국민의 축일은 휴일로 한다(「国民の祝日」は、休日とする)

20) 각 법률은 공통적으로 ① 일요일 및 토요일, ② 국민축일, ③ 12월29일-1월3일을 휴일로 규정하며, 「검찰심사회법」은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의 휴일은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²¹⁾에 따라 조례로 정함
 - 지정 대상은 일요일 및 토요일, 국민축일법에 규정된 휴일, 연말연시에 조례로 정한 날임²²⁾

|표 6| 국민 축일

국민 축일	날짜	국민 축일	날짜
元日(원단일)	1월 1일	こどもの日(어린이날)	5월 5일
成人の日(성년의 날)	1월 두번째 월요일	海の日(바다의 날)	7월의 세번째 월요일
建国記念の日(건국기념일)	2월 11일	山の日(산의 날)	8월 11일
天皇誕生日(천황 생일)	2월 23일	敬老の日(경로의 날)	9월 세번째 월요일
春分の日(춘분의 날)	3월 20~21일 경	秋分の日(추분의 날)	9월 22~23일 경
昭和の日(쇼와)	4월 29일	スポーツの日(스포츠의 날)	10월의 두번째 월요일
憲法記念日(헌법기념일)	5월 3일	文化の日(문화의 날)	11월 3일
みどりの日(녹색의 날)	5월 4일	勤労感謝の日(근로감사의 날)	11월 23일

※ 자료: 국민축일법을 기초로 작성

|표 7| 일본의 휴일관련 법제

구분	대상	법률	공휴일 등
국민	일반 국민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표 4] 참조
국가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 및 토요일 • 국민축일법에 규정된 휴일 •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입법기관	국회에 설치된 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	
	사법기관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	
	기타	검찰심사회법	
	지방공공단체	조례(지방자치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 및 토요일 • 국민축일법에 규정된 휴일 • 연말연시에 조례로 정한 날 • 기타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날

※ 자료: 각 법률을 기초로 작성함

- 대체축일 및 임시축일 제도
 - 축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 다음의 평일을 축일로 정하는 대체축일제를 도입함(1974년)²³⁾
 - 황실과 관련된 경조사가 있는 경우 임시법을 제정하여 해당 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²⁴⁾
- 국민 휴일(징검다리 휴일)
 - 축일과 축일 사이에 놓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1985년)²⁵⁾ 이렇게 지정된 휴일들을 국민 축일 및 대체 축일과 구분하여 국민 휴일로 통칭함

21)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지방공공단체의 휴일은 조례로 정한다

22) 그밖에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사회적 의미가 있고 이미 주민이 다함께 기념하고 있어 휴일로 지정하였을 때 널리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총무대신(행안부장관에 해당)과 사전협의하여 정함(「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

23) 「국민축일법」 제3조제2항

24) 이렇게 지정된 휴일은 국민축일법 상의 휴일로 간주됨. 2019년의 예로 「황제의 대관식 날과 즉위 예의 정전의 의식이 행해지는 날을 휴일로 하는 법(天皇の即位の日及び即位礼正殿の儀の行われる日を休日とする法律)」이 제정되어 천황 즉위일(5월 1일)과 즉위 의식일(10월 2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음

25) 「국민축일법」 제3조제3항

- 요일지정 공휴일제 (Happy Monday)
 -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을 참고한 해피먼데이 제도(ハッピーマンデー制度)를 도입하여 일부 축일을 월요일로 변경함²⁶⁾

□ 시사점

- 일본의 휴일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한편, 국가기관별로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등 법제 측면에서 적용대상이나 적용일(일요일 및 토요일) 등에 공백이나 모호함이 없이 체계적으로 설계됨
 - 국민 축일에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의 휴일에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포함됨
 - 휴일 사이에 놓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을 법률에 명시함

3. 영국: 은행휴일법(Bank Holiday Act)

□ 주요 법제

- 영국의 공휴일 제도는 은행 및 금융거래법(Banking and Financial Dealings Act)(이하, 은행법)²⁷⁾에서 정한 은행휴일(Bank Holiday)을 기준으로 확립됨
 - 은행법은 지역국가(Country)별 휴일을 정하고²⁸⁾ 국왕의 휴일 추가·변경 권한을 명시함²⁹⁾
- 영국에서 휴일은 지정 근거에 따라, 크게 ① 관습법에 의한 휴일(Common law Holidays), ③ 법정 휴일(Statutory Holidays), ② 왕실령에 의한 휴일(Holidays by Royal Proclamation)로 구분됨³⁰⁾

표 8 | 지역국가별 은행휴일

잉글랜드·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New Year's Day (1월1일) ②	New Year's Day (1월1일) ①	New Year's Day (1월1일) ②
Good Friday ③	2 January (1월2일) ①	St Patrick's Day (3월17일) ①
Easter Monday ①	Good Friday ①	Good Friday ③
First Monday in May ②	First Monday in May ①	Easter Monday ①
Last Monday in May ①	Last Monday in May ②	First Monday in May ②
Last Monday in August ①	First Monday in August ①	Last Monday in May ①
Christmas Day (12월25일) ③	St Andrew's Day (11월30일) ①	Orangemen's Day (6월12일) ③
Boxing Day (12월26일) ①	Christmas Day (12월25일) ①	Last Monday in August ①
	Boxing Day (12월26일) ②	Christmas Day (12월25일) ③
		Boxing Day (12월26일) ①

※ 주: ① 은행법 근거 ② 왕실령 근거 ③ 관습법 근거

※ 자료: 은행법 및 Doug Pyper, 「Bank and public holiday」, 『Briefing paper』, House of commons Libray, 2015

26) 1998년 개정에서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이, 2001년 6월 개정에서 '바다의 날'과 '경로의 날'을 각각 월요일로 변경함
 27) 동법의 전신은 1871년 제정되어 100년간 지속된 은행휴일법(Bank Holiday Act)으로 1971년 은행및금융거래법으로 대체되었음
 28) 은행휴일법 제정 당시 관습에 의해 이미 확립되어 있던 휴일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예: Good Friday, Christmas Day)
 29) Banking and Financial Dealings Act 1971 Section 1 (2),(3)
 30) 각종 법령이나 실무에서 공휴일(Public Holiday)은 은행휴일과 같거나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술적으로 공휴일은 관습법에서 유래한 휴일로, 은행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로 구분됨 (Doug Pyper, 「Bank and public holiday」, 『Briefing paper』, House of commons Libray, 2015)

-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도
 - 요일지정제(월요일)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일부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다음의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함³¹⁾
 - 여왕은 왕실령에 의해 수시로 특별한 날을 전국적 또는 국지적인 은행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휴일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³²⁾

□ 시사점

- 영국은 지역국가 연합의 왕정국가라는 특성과 관습법 체계 등으로 인해 여왕, 의회, 관습 등에 따라 공휴일 지정권한 및 유래를 달리 하는 다소 복잡한 공휴일 제도를 운용함
- 은행법이 위임한 여왕의 은행휴일 추가·변경 권한은 형식적으로 왕실령에 의해 행사되지만 이는 불문 관행에 따라 내각 결정에 대한 재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영국정부의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음³³⁾
 - 한편, 대체공휴일 지정 권한은 공휴일과 주말이 중복될 때뿐만 아니라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의 특정 은행휴일을 다른 기념일로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권한임³⁴⁾

4.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 주요 법제

- 노동법(Code du travail)에서 11종의 축일(fête)을 정하고, 축일이 휴일(jour férié)임을 명시함³⁵⁾
 - 프랑스는 인접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³⁶⁾ 최소 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휴일 제도를 확립함³⁷⁾

【표 9】 법정 축일

기념일	지정일	기념일	지정일
Le 1er janvier (신년일)	1월1일	Le 14 juillet (프랑스혁명기념일)	7월14일
Le lundi de Pâques (부활절 월요일)	부활절 다음날(월요일)	L'Assomption (성모승천일)	8월15일
Le 1er mai (노동절)	5월1번째 월요일	La Toussaint (모든 성인의 날)	11월1일
Le 8 mai (2차대전 전승기념일)	5월8일	Le 11 novembre (1차대전 휴전일)	11월11일
L'Ascension (예수승천일)	부활절 후 40일(목요일)	Le jour de Noël (성탄절)	12월25일
Le lundi de Pentecôte (오순절 월요일)	오순절 다음날(월요일)		

※ 자료: 노동법을 기초로 작성

31) 은행법에 명시된 휴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정되며(은행법 Schedule 1), 관습법에 의해서나 법률 제정 이후 추가된 휴일에 대해서는 왕실령으로 대체휴일을 정함(은행법 Section 1 (2))

32) 은행법 Section 1 (3)

33) Doug Pyper, 「Bank and public holiday」, 『Briefing paper』, House of commons Libray, p.3, 2015

34) 은행법 Section 1 (2), 일례로 2020년에 노동절(5월 첫째주 월요일)을 금요일로 변경하여 유럽전승기념일 75주년을 기념함

35) Code du travail Article L3133-1

36) 예외적으로 Alsace-Moselle 지역은 지방 법률에 근거하여 성 금요일(vendredi Saint), 생테티엔(Saint-Etienne) 2개의 휴일을 추가로 지정함

37) 이는 프랑스가 단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진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임

- 교량(Ponts) 휴일 및 연차휴가(les congés annuels)³⁸⁾ 실시 전 휴일
 -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공휴일과 주휴일 사이에 놓인 하루나 이들의 평일과 연차 휴가 전 1일이 휴일로 주어짐³⁹⁾

□ 시사점

- 축일을 노동법에 규정하고 이를 휴일로 명시함에 따라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 및 공휴일의 근로관계 규율 취지를 강화함
- 한편, 프랑스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연간 공휴일수 편차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휴일 외에 노동자 중심의 휴가(休暇)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휴일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휴가를 통해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⁴⁰⁾

5. 독일: 주별 공휴일법(Feiertagsgesetz)

□ 주요 법제

- 통일협정(연방법률)에서 정한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10월 3일)⁴¹⁾을 제외하고 각 주별로 자치법률을 통해 공휴일(Feiertag)을 지정함
 - 각 주의 공휴일법은 ① 공휴일, ② 일요일, ③ 기념일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각각을 명확하게 구분함⁴²⁾

[표 10] 주별 법정 공휴일(예시)

베를린 주	바이에른 주	브란덴부르크 주
Neujahrstag (신년일)	Neujahr (신년일)	Neujahrstag (신년일)
Frauentag (8. März)(여성일날, 3월8일)	Heilige Drei Könige(Epiphania)(주현절)	Karfreitag (성금요일)
Karfreitag (성금요일)	Karfreitag (성금요일)	Ostersonntag (부활절 일요일)
Ostermontag (부활절 월요일)	Ostermontag (부활절 월요일)	Ostermontag (부활절 월요일)
1. Mai (노동절)	1. Mai (노동절)	1. Mai (노동절)
Himmelfahrtstag (예수승천일)	Christi Himmelfahrt (예수승천일)	Christi Himmelfahrtstag (예수승천일)
Pfingstmontag (오순절)	Pfingstmontag (오순절)	Pfingstsonntag (오순절 일요일)
Tag der deutschen Einheit (통일의날)	Fronleichnam (코퍼스크리스티)	Pfingstmontag(오순절 월요일)
1. Weihnachtstag (크리스마스 첫째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통일의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통일의날)
2. Weihnachtstag (크리스마스 둘째날)	Allerheiligen (만성절)	Reformationsfest (종교개혁기념일)
8. Mai 2020 (유럽전승기념일 75주년)	Erster Weihnachtstag (크리스마스 첫째날)	1.Weihnachtsfeiertag (크리스마스 첫째날)
	Zweiter Weihnachtstag (크리스마스 둘째날)	2.Weihnachtsfeiertag (크리스마스 둘째날)

※ 자료: 각 주 법률을 기초로 작성

38) 프랑스의 연차휴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해진 시기에 최소 3주 이상 장기휴가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임

39) 한편, 노동법에서도 이러한 민간의 휴일 관행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수용X)하고 있음(Code du travail L3121-50, 3)

40) Code du travail(노동법) :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이며(L3121-27) 1개월에 2.5일(년간 30일)의 연차일수를 부여받고(L3141-3), 5~10월 중에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되(L3141-13), 한번에 24일 이내의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L3141-17), 12일 이내의 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함(L3141-18)

41) Einigungsvertrag Art 2 Hauptstadt, Tag der Deutschen Einheit (2)

42) 베를린주의 경우, 공휴일법 제1조제1항에서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님을 명기함(Gesetz über die Sonn- und Feiertage, § 1 FeiertG – Allgemeine Feiertage, (1) Allgemeine Feiertage sind außer den Sonntagen)

- 대체공휴일은 적용하지 않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은 개정의 효력기간을 당해로 제한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통해 실시한 사례가 있음⁴³⁾

□ 시사점

- 공휴일 지정에 대한 지역 자치권이 확립되어 있으면서도 각 주의 공휴일법은 제명 및 체계, 내용이 유사한 통일된 법제 형식(공휴일법, Feiertagsgesetz)을 따름
- 공휴일법은 공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며,⁴⁴⁾ 공휴일을 정하는 목적 외에 공휴일과 일요일에 실시되는 종교적 행사와 기념 행위 등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둠⁴⁵⁾
- 독일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휴일의 대부분이 종교적 행사와 관련되어 있어 지역별 주류 종교에 따른 일부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일한 종류의 휴일을 공유함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국내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의 근거,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 공휴일 지정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임

- 또한, 각국의 공휴일 제도는 국가 간에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저마다의 고유한 정치, 역사, 종교,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공휴일의 내용과 제도 운용 등을 달리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연방주 및 지방정부 등이 공휴일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공휴일 수, 지정대상 등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

표 11 | 각 국가의 공휴일 제도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공휴일 근거		관공서공휴일규정 (대통령령)	연방법 각 주법	국민족일법 행정기관휴일법 국회기관휴일법 재판소휴일법	관습법 은행법 왕실령	노동법	연방법 각 주법
일요일 포함 여부		○	X	X	X	X	X
대체 공휴일	도입여부	△ (설날추석: 일, 어린이날: 토·일)	○ (토·일)	○ (일)	○ (토·일)	X	X
	적용일수	15일 중 7일	날짜지정 휴일 전부	날짜지정 휴일 전부	날짜지정 휴일 전부	-	-
요일 지정제	도입여부	X	○	○	○	○	○
	적용일수	-	6일 (연방법 기준)	4일	5일	4일	4일 (주법 기준)
비고			공휴일수는 주 및 지방정부에 따라 다름	일본국민과 국가기관을 분리하여 규율	공휴일수는 지역국가 및 지방정부에 따라 다름		공휴일수는 주에 따라 다름

※ 자료: 각 국가의 휴일법제를 기초로 작성

43) 베를린주는 2020년에 75주년을 맞는 유럽전승기념일(5월8일)을 법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44) 단, 예외적으로 헤센주가 일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하고 있음(Hessisches Feiertagsgesetz (1) Gesetzliche Feiertage sind die Sonntage sowie)

45) 독일연방기본법 제140조(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XI Art. 140) 및 근로시간법 제9조제1항(Arbeitszeitgesetz § 9 (1))에서 일요일과 휴일의 근로를 엄격히 금지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각 주의 공휴일법 또한 상위법의 내용을 상기하거나 직접적인 보호 규정을 둠

IV. 공휴일 법제화 논의

1. 법률안

- 공휴일 법제화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최초의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에서 윤상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2008.12.9.)임
 - 한편, 국경일법과 연계하여 공휴일법제화를 시도한 최초의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에서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2009.9.30.)이었음
- 제18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공휴일 법제화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총 33건임
 - 국회 대수별로는 제18대 5건, 제19대 14건, 제20대 14건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형태별로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제정안 23건과, 국경일법과 연계한 제정안 9건, 기념일규정과 연계한 제정안 1건임

【표 12】 제18대-20대 국회 제출 법률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통	• 공휴일의 적용 대상을 관공서가 아닌 전체 국민으로 함
국경일법과 통합	• 국경일과 공휴일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기념일규정과 통합	• 기념일과 공휴일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공휴일 추가 지정	• 식목일, 노인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제헌절(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함
임시공휴일 지정	• 국회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임시공휴일 일정기간 전에 지정사실을 관보·홈페이지 등에 게재함 •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대체공휴일 지정	•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 공휴일 확대 • 설날·추석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다음 주의 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 자료: 각 법률안을 기초로 작성,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주요쟁점

가. 공휴일의 법·제도적 안정성 제고

- 요일지정제와 대체공휴일제는 연간 공휴일수의 편차를 방지하여 휴일의 양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
 - 우리의 경우 요일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공휴일제는 1959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다 2013년에 재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음⁴⁶⁾

46) 한국천문연구원, 년도별 월력요향 참고(<<https://astro.kasi.re.kr/life/post/almanac>>)

- 대체공휴일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에 따라 연간 공휴일수 편차를 방지하는 효과를 달리하는데, 현행 제도는 적용 대상을 명절연휴와 어린이날로 한정하면서도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라고만 규정하여 사실상 일요일과 중복될 때로 적용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⁴⁷⁾
 - 또한, 명절의 경우에는 3일 연속의 기간단위 휴일이라는 특성이 있어 토요일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일지정제 및 전면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공휴일수 편차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휴일의 양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임
- 대체공휴일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를 목인 또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공휴일법제화 과정에서 대체공휴일제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⁸⁾

□ 한편, 관공서공휴일규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총 20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공휴일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이 14회에 이르고 대체공휴일제는 수차례 도입과 폐지를 반복한 바 있음(표 3) 참고)

- 공휴일 중에서 식목일과 한글날은 지정과 해제를 반복한 한편, 제정 당시 지정된 11개의 공휴일 중 현재까지 변함없이 공휴일인 날은 총 6일에 그침
 - 이러한 공휴일의 변동성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며, 같은 해 제정된 국경일법이 실질적으로 단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서도 현저히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현 시점에서 공휴일의 안정성이 특히 제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의 효력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법제화의 기본 취지인 제도적 안정성 강화가 한층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을 매개로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유급)과 연동되도록 하여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휴일 자체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공서 및 공휴일의 정의 명확화

□ ‘관공서’와 ‘공휴일’ 개념을 별도로 정의한 법령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7조⁴⁹⁾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⁵⁰⁾를 관공서공휴일규정의 위임 근거로 판시함⁵¹⁾에 따라 관공서의 범위와 공휴일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양 법률의 위임 조항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용대상인 “관공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곳 즉, 국회·법원 등 독립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체를 포함⁵²⁾하며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자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의미함

47) 단,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적용

48) 한편,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공휴일법률안 중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은 10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전면 적용하는 법률안은 발의된 바 없음

49)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50) 제59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1) 2013헌마34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위헌확인)

52) 국·공립학교 포함

- 다만, 위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
 - 1949년 「관공서공휴일규정」 및 「국가공무원법」⁵³⁾ 제정 당시는 제헌국회와 정부 외에 다른 국가기관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기로,⁵⁴⁾ 초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위임입법으로 현행 “대통령령 등”이 아닌 “대통령령”만을 규정하여 당시의 국가기관이 분화되지 못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음⁵⁵⁾
 - 현재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독립기관의 위상이 확립되어 있고 각 기관이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정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⁵⁶⁾ 70년 전 기준으로 복무사항 중 휴일만을 분리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여전히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⁵⁷⁾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의 휴일을 통일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여 하나의 법규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⁵⁸⁾, 단지 공무원의 휴일만을 정할 목적이더라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관공서가 쉬는 날을 그대로 상향하여 입법하는 것은 휴일 법제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일법을 마련하되, 관공서의 휴일은 현행 각 기관별 복무규정에 휴일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면 법체계 측면에서 개선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법규범 내에서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요일을 포함하되 휴무일인 토요일⁵⁹⁾ 및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는 구분됨⁶⁰⁾
 - 그러나 법령 간에도 공휴일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거나(표 10), 공휴일이 법률로 정해진 적이 없는데도 법정공휴일 표기가 통용되는가 하면, 이마저도 상호 범주를 달리 하는 등(표 11)⁶¹⁾ 법규범 안에서 공휴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한편, 법정공휴일 표기는, 공휴일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상이 특정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휴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 또한 있으므로, 임시공휴일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고정된 공휴일”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명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법규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53) 위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은 관공서공휴일규정보다 2개월 늦게 제정됨

54) 「정부조직법」이 1948년 7월, 「국회법」이 1948년 10월, 「지방자치법」 1949년 8월 15일, 「법원조직법」이 1949년 8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1960년 6월 17일, 「헌법재판소법」이 1988년 9월 1일 제정되었음

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인 1961년 9월에 와서야 비로소 “각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

56)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국회공무원복무규정」, 「대법원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57) 일본의 경우, 국가기관의 휴일을 행정, 입법, 사법기관별로 나누어 각각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휴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법률은 구분되어 있지만 각각의 휴일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통일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58) 사실, 각 국가기관 등의 복무사항을 통일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 법규범의 단일화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임

5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60) 한편, 공휴일(公休日)은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가장 유사한 예로 영미권 국가에 'Public Holiday'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대중적 또는 공식적 휴일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국의 경우 관습법에 의한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의 휴일만을 이르는 용어는 아님

61) 「법정공휴일」을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은 총 135개로 101개의 자치법규와 33개의 행정규칙, 1개의 법령이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검색일 2020.5.15.).

|표 13| 공휴일의 범위(예시)

구분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제5조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관세법 제8조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①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2조	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일요일·국경일 등)과 휴무토요일을 말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최종검색일: 2020.5.15.)

|표 14| 법정공휴일 표기 및 범위(예시)

구분	주요 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의2 제5호마목 및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재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해야 한다.
거제시 승용차 운영조례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2조	3. 단속원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이동·운행하는 등의 행위. 다만, 부득이 하게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발일로부터 15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	9.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	②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최종검색일: 2020.5.15.)

□ 국회에 제출된 휴일법제정안 33건 중 제명에 “공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2건⁶²⁾이 있음(제명 동일)

- 제명에 “공휴일”을 사용하고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 경우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을 동반하면서 공휴일의 법적 성격을 ‘관공서의 휴일만을 별칭’하는 의미에서 ‘공공의·공식적 휴일’의 의미로 확장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국민의 휴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2) 홍익표의원(2016.6.30.)과 신용현의원(2017.9.26.)이 각각 대표발의함

다. 일요일과 휴일의 분리

- 법정휴일은 종교, 문화,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요일은 주로 근로관계법에서 주휴일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 휴일 제도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존하여 확립된 점은, 구조적으로 일요일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단순히 근로관계를 규율하려는 취지와 기념일 등을 정하고 이를 되새기고자 하는 취지를 혼용하여 규율하게 된 한계를 낳은 측면이 있음
 - 공휴일은 당연히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휴일은 명절, 축일, 기념일 등을 정하여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일에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통상 공휴일은 역사적으로 정기성을 가진 문화·종교적 행사나 기념할 만한 날 등을 국가가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법규범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확립된다는 측면에서, 단순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도래하는 일요일을 다른 기념일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휴일만을 정할 목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국가 공휴일을 정하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일요일이 공휴일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을 그대로 상향 입법하는 경우 일요일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되기 때문임
 - 일요일이 법정휴일이 되면,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1주일에 하루 이상을 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⁶³⁾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일요일 근로를 피할 수 없어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임
-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휴일법제정안 33건 중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2017. 9. 26.)이 유일함⁶⁴⁾
 - 공휴일법제정안이 일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법제화를 우려하는 정부의 유력한 반대 논거의 하나로 제시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법을 마련하여 관공서공휴일규정과 양립하거나, 일본과 같이 국민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을 별도의 법률로 각각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⁶⁵⁾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⁶⁶⁾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동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⁶⁷⁾

63)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64) 제명에 공휴일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안 외에도 홍익표의원안이 있기는 하지만 홍익표의원안 역시 관공서공휴일규정을 그대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음

65) 제18대 국회,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범래 위원이 최초로 일요일과 기념일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입법하는 대안을 정부를 상대로 제시한 바 있으나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못하였음(제289회 행정안전소위 1차, 2010.4.15.)

66)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토요일은 휴무(휴일)로 규정함

67) 한편,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일요일을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음(「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제2항)

라.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계

- 한편, 우리나라는 국경일법에서 국경일을 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국경일 중 일부와 일요일 등 다른 날을 포함하여 공휴일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기 관공서공휴일규정은 현행과 같이 국경일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경일’로만 표기하여 국경일과 공휴일을 연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고 보임
 - 1949년 제정 이후 ‘국경일’ 표기를 이어오다가 2005년 개정에서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별 국경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한편, 한글날은 기념일규정에서 정한 단순 기념일에서 2005년 국경일로 승격되었으나 2012년에 와서야 공휴일로 재지정⁶⁸⁾ 되었음
 - 특정일이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국경일이 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일반 국민은 쉬는 날을 더 특별한 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의 일부를 선별하여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국경일 간의 경중을 가리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법체계의 혼동을 초래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 역대 국경일법과 관공서공휴일규정을 통합한 형태의 법률안 9건 중 ‘국경일’로만 표기하여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동을 도모한 법률안은 김명연의원안과 한정애의원안 2건임
 - 현행 국경일법과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분명히 달라 형식적으로 통합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공서공휴일규정을 상향 입법하면서 적용대상을 관공서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경일과 공휴일 사이의 단절이 어색함으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공휴일 지정은 국가공동체 내에서 종교·역사·문화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되새기고자하는 취지를 반영하기 마련이므로, 최상의 기념가치를 갖는 국경일을 공휴일 지정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국민의 관념이 형성된 측면이 있고,⁶⁹⁾ 우리나라의 경우 60년 가까이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의 형성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 국경일과 공휴일의 불가분성,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 및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동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8) 한글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 개정에서 제외된 바 있음

69) 온라인 미디어 심화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소셜데이터분석(2019.1.16. - 7.15.)을 통한 제헌절에 대한 국민인식평가에서 제헌절과 함께 언급된 연관어 순위에서 “공휴일”이 3위를 차지하였고 광복절, 한글날 등 다른 국경일이 모두 7위안에 순위를 차지하였음. 한편, 공휴일과 제헌절의 연관성을 추적한 결과,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것에 대한 의문, 아쉬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8>)

V. 결론

-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법제와 구별되는 국내 공휴일 법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공휴일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 있는 점, 요일지정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 그리고 관공서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휴일법제를 특징짓는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부분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가진 형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동규정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존하여 휴일 제도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를 지속해온 결과라고 봄이 타당함
- 향후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가 아닌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일요일을 제외하여 공휴일 지정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휴일 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 제도로서 공휴일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의 종류 등을 정하는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공동체의 집단적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한편, 공휴일 법제화는 법제형식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 대한 지정권한을 행정부 관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함
 - 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하여 공휴일 법제화의 취지는, 공휴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기념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날 즉, 상설공휴일의 지정권한을 입법권에 두는 것이고 임시공휴일과 같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휴일 지정권한은 행정권에 두려는 것임
 -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이 가진 다양한 기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의 공휴일 법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참고문헌

- ////////////////////////////////////
- * 김 원, 「독일의 종교 축제와 법정 공휴일의 상관관계」, 『독일어문학』, 한국독일언어학회, 2018.
 - * 최춘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서강법학』, 서강대 법학연구소, 2010.
 - * 최환용,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KLRI ISSUE PAPER』, 한국법제연구원 2015.
 - * Stephen W. Stathis, 「Federal Holidays: Evolution and Applic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1999.
 - * Doug Pyper, 「Bank and public holidays」, 『BRIEFING PAPER』, House of Commons Library, 2015.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 세계법령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일본전자정부법령시스템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100/>
 - * 프랑스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egifrance.gouv.fr/>>
 - * 영국법령정보시스템<<http://www.legislation.gov.uk/>>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5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0.6.22	허민숙
제150호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	2020.6.18.	정영주
제149호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2020.6.18.	최미경
제148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2020.6.16.	하혜영
제147호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2020.6.16.	조인식
제146호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2020.6.16.	박혜림
제145호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2020.6.9.	형혁규
제144호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2020.6.4.	김여라
제143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2020.6.4.	박준환
제142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	2020.6.3.	조서연
제141호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2020.5.30.	김진수
제140호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5.30.	유재국
제139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2020.5.30.	문은희
제138호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과제	2020.5.30.	조영은
제137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2020.5.29.	노성준
제136호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20.5.27.	김창호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2020.5.19.	최병근
제134호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2020.5.4.	허민숙
제133호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2020.4.28.	김예성
제132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2020.4.7.	정준화
제131호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2020.4.3.	최미경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30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4.2.	박진우
제129호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4.1	김경민
제127호	적합성평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3.30.	김종규
제126호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3.25.	장영주
제125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2020.3.23.	임언선
제124호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2020.3.18.	황현영
제123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2020.3.9.	이만우
제122호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020.3.5.	허민숙
제121호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2020.3.3.	허민숙
제120호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2020.3.2.	이덕난
제119호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2020.2.24.	김선화
제118호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20.2.20.	유제범 김경민
제117호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0.2.12.	최미경
제116호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2020.2.6.	형혁규
제115호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2020.1.23.	이정진 김종갑
제114호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의 필요성	2020.1.22.	정민정
제113호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2020.1.17.	백상준
제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1.15.	권성훈
제111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	2019.12.31.	김도희
제110호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과 개선방향	2019.12.31.	정민정

제152호

NARS

현안분석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

